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의안 번호	18844
----------	-------

제안연월일 : 2026. 5.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제2209483호)	문대림의원	2025. 3. 31.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06.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제2210874호)	주철현의원	2025. 6. 17.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5.08.21.)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2211684호)	정희용의원	2025. 7. 23.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5.08.21.)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2212820호)	김정재의원	2025. 9. 9.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5.09.22.)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213285호)	조승환의원	2025. 9. 25.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5.11.05.)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2216314호)	어기구의원	2026. 1. 26.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6.04.0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2216965호)	임미애의원	2026. 2. 23.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6.04.0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2217161호)	조경태의원	2026. 2. 27.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6.04.03.)

가.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04.09.)
에서 위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3.)
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8건의 법률
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
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급부상하고 있음.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 대비 항해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 및 공급망 다변화에 유리하며, 기존 교역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극지 선박 및 에너지 자원 확보의 잠재력이 크지만, 그간의 정책은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편중되어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조선, 해양플랜트, 에너지 등 연관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며 연구 개발,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과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수립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와 사무 지원을 위한 북극항로추진본

부를 설치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정부가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 활용 및 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자. 정부가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북극항로 관련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과 북극항로와 연관된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극해”란 북위 66도 30분 이북의 해역을 말한다.
2. “북극항로”란 북극해를 포함하여 운항하는 항로를 말한다.
3. “북극항로 연관산업”이란 북극항로를 활용한 선박 운항과 관련된 산업, 북극항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또는 북극항로 활용 확대에 따라 촉진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에 따른 해운·항만·물류 관련 산업
 - 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바목에 따른 해양환경 관련 산업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 관련 산업
 - 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해양과학기술

관련 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데이터산업

마.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기술산업

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조선·플랜트 관련 산업 및 선박부품·기자재 관련 산업

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자원의 개발·수입 관련 산업 및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공급 관련 산업

자.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관련 산업 및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레저관광산업

차. 「보험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험업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산업

카.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상산업

다.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해사안전산업

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산업

하. 그 밖에 가목부터 과목까지의 산업에 준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4. “북극항로사업자”란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북극해 관련 국제 조약을 준수하며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운항에 필요한 비상대응체계 및 지원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의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북극항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극해와 북극항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지역별·부문별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5.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개발, 도시재생 및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6.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물류단지, 산업단지의 조성·지원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7.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연구·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9.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인 북극항로 운항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12. 북극항로 안전운항을 위한 수색구조 선박·장비 및 지원 인프라 확보 계획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북극항로 이용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북극항로사업자, 그 밖에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이하 “육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육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전략의 시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북극항로위원회) 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관련 관계 부처별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북극항로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 북극항로 관련 기술·경제·사회·국제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

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 ⑦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극항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심의·의결
- ② 실무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북극항로추진본부)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둔다.

② 북극항로추진본부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 정부는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국제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의 양성
4. 그 밖에 북극항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2. 북극항로 운항 및 물류 데이터 구축·제공 및 상업 운항 지원
3. 북극항로 정보플랫폼 구축
4. 북극항로 안전운항 정보, 고정밀 위치 정보 및 최적항로 정보 제공 등 항해안전 지원
5. 그 밖에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제협력) 정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

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への 참가, 국제공동연구개발,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에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